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3. 28.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3월 1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7년 3월 26일)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0조 내지 제34조)
-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함(안 제35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專 門 委 員 이 남 식)

- 2006.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여성발전기금 운영규모는 2억원임.

4. 審 査 結 課 : 原 案 可 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	----

제출년월일 : 2007.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여유자금을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29조 제④항)
- 심의위원회 기능의 내실화 (안 제30조 ③항, 제1호, 제2호)
- 기금운용 성과분석, 주요항목인 장·관·항 지출금액 변경 신설 (안 제31조 제①항 제4호, 제5호)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 신설 (제31조 제②항)
- 회계관직 지정대상 직위 하향 조정 (안 제35조 제②항)
- 심의회를 위원회로 변경 (안 제30조제2항, 제5항, 제31조 제목 및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7조제1항)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06. 2. 6 ~ 2007. 2. 26)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로 한다.

제1조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담당팀장이”을 “여성정책담당주사가”로 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30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부구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여성정책관련 업무담당국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구의원 2명”을 “구의원 1명”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지역경제과장,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여성정책관련업무담당팀장”을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 성과분석
5.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2항중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국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여성정책관련업무담당과장”을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하며 제3항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7조 제1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여성발전기본법</u> 」-----
제11조(복지증진 등) ① ~ ② (생략)	제11조(복지증진 등) ① ~ ② (생략)	제11조(복지증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u>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u>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u>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u>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	「 <u>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u> 」-----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u>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u> 이 되고 서기는 <u>담당팀장</u> 이 된다.	②간사는 <u>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u> 이 되고 서기는 <u>담당팀장</u> 이 된다.	②	-----	<u>가정복지과장</u> ----- ----- <u>여성정책담당주사가</u> -----.
③ (생략)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생략)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u>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u>
제30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제30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u> (이하 “ <u>심의회</u> ”라 한다)를 둔다.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u> (이하 “ <u>심의회</u> ”라 한다)를 둔다.	①	-----	-----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u> (이하 이 장에서 “ <u>위원회</u> ”라 한다)-----.
② <u>심의회</u> 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u>심의회</u> 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u>위원회</u>	-----.
③위원장은 <u>부구청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u>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국장</u>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u>부구청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u>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국장</u>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	----- <u>주민생활지원국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u>가정복지과장</u> -----,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u>구의원 2명</u>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u>구의원 2명</u>	1.	-----	----- <u>구의원 1명</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u>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u></p> <p>3. (생략)</p> <p>⑤위원장을 보좌하고 <u>심의회</u> 업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여성정 책관련업무담당팀장이</u> 된다</p> <p>제31조(심의회 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u></p> <p>2. <u>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3. <u>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u></p> <p>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u>심의 회를</u> 대표하고 <u>심의회</u>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생략)</p> <p>제33조(회의) ①<u>심의회</u>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34조(수당 등) <u>심의회</u>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2. ----- <u>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u></p> <p>3.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u> ----- ----- <u>여성정책담당주사가</u> -----.</p> <p>제3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u></p> <p>2. <u>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3. <u>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u></p> <p>4. <u>기금운용 성과분석</u></p> <p>5. <u>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u></p> <p>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 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 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u>위원회</u> ----- <u>위원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3조(회의) ①<u>위원회</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4조(수당 등) <u>위원회</u> ----- -----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생략)</p> <p>②기금운영관은 <u>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국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 과장</u>으로 한다.</p> <p>③<u>지방재정법</u>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u>심의회</u>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5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p> <p>②----- <u>가정복지과장</u> ----- ----- <u>여성정책담당주사</u> -----.</p> <p>③ 「<u>지방재정법</u>」 ----- ----- ----- -----.</p> <p>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u>위원회</u> ----- ----- ----- -----.</p> <p>② (현행과 같음)</p>